

## 손실보상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「우회고가 정비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20.

###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



#### 1. 공익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 : 우회고가 정비사업
- 나. 사업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2가 3-2 일원
- 다. 사업규모 : 광 3-2호선 연장 L=1,690m, B=26.5~31m  
대 2-8호선 연장 L=16m, B=10m  
소 1-20호선 연장 L=11m, B=10m
- 라. 사업기간 : 2021. 2. 22. ~ 2025. 12. 31.
- 마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장(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: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)

#### 2. 보상계획

- 가. 보상대상 : “토지 조서” 참조
- 나. 보상방법 및 절차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
☞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→ 보상액 산정 → 보상협의요청 (보상금개별통지) → 협의(계약체결) →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
\* (협의 불성립시) 수용재결 →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→ 이의재결 또는 소송

- 다. 보상시기 :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(25년 4월 예정)
- 라. 보상액 산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
※ 단,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.
- 마. 보상금 지급 :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

### 3.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

가. 열람기간 : 2025. 1. 20.(월) ~ 2025. 2. 7.(금) ※ 14일 이상(토·일 포함)

나. 열람장소 :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토목보상팀(3층)(☎ 032-440-5216)  
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

다. 열람방법 :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

라. 이의신청방법 :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

※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.

### 4. 편입 토지(총8필지)

소재지	지 번
중구 북성동 1가 (4필지)	4-358, 3-89, 3-90, 3-88
중구 항동1가 (4필지)	5-9, 5-47, 5-48, 5-45

### 5. 지장물 등 :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

※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“고시/공고”( <http://www.incheon.go.kr> ) 및 개별 통지문 참조

### 6. 기타사항

가.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,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
나.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.

다.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